

일본의 소위 「6차 산업화법」¹⁾의 입법배경과 주요내용

1. 처음에

최근 들어 소위 “6차 산업”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 + 2차 산업 + 3차 산업 = 6차 산업의 의미를 넘어, 1차, 2차, 3차 산업의 유기적·융복합적 결합을 의미하는 1차 산업 × 2차 산업 × 3차 산업 = 6차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6차 산업은 농촌관광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개념이다. 즉, 농촌체험 사업을 중심으로, 농업이라는 1차 산업과 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재화의 생산인 2차 산업, 그리고 관광 프로그램 등의 각종 서비스를 창출하는 3차 산업이 어우러지는 것으로 농촌관광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2005년부터 시작된 실험사업의 일환으로 6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2007년부터 농어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²⁾ 그 후 ‘농공상 연대’라는 개념의 도입으로 농·공·상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과 협력업무 체계 등이 구축되었다. 2009년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산업’을 농어촌의 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총칭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동법 제2조 제10호). 이러한 농어촌 산업은 2010년부터 도입된 포괄보조 체제 안에서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를 통해 각 지역에 따라 특성에 맞게 발굴·발전되고 있다.³⁾

그러나 6차 산업화는 매력적인 신산업 분야이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고,⁴⁾ 특히 사회일반에서의 자생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이에 6차 산업화의 시

- 1) 소위 「6차 산업법」의 정식 명칭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 2) 2007년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을 통하여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개념을 도입하고, 동 사업의 개발·지원·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동법 제67조 내지 제76조 참조).
- 3) 서윤정, 6차 산업 융복합 혁명, HNCOM, 2013, 56면 이하.
- 4) 이에 대해 상세한 것은 서윤정, 위의 책, 89면 이하 참조.

작과 성공적 정착으로 평가받는 일본은 우리에게 좋은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최근 일본은 법적 정비를 통하여 완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바, 2010년 12월 3일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의 창출 및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6차 산업화법」이라 한다)’이 제정·공포되었다. 하지만 6차 산업화법의 제정 이전에도 다각도의 연구와 법령 제·개정 작업이 이루어져 왔고, 그동안의 성과를 통합하고 종합화한 노력의 산물이라 보여진다. 다음에서는 「6차 산업화법」의 입법배경과 제정경위 및 주요 내용을 개관하도록 한다.

II. 입법 배경과 제정 경위

일본의 6차 산업화는 시장개방의 진전 속에서 농촌지역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자생적으로 실시되는 과정에서 그 효과가 인정되어 정책적인 지원에 의해 확산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 농촌현장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여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 고부가가치 실현 등을 통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였다.⁵⁾ 2000년대 들어 경제산업성은 2005년부터 신연계사업, 2007년 지역 자원 활용사업을 전개하였고,⁶⁾ 그 후 농림수산

성과 공동으로 ‘농상공 연대사업’을 추진하였다. 농상공 연대사업은 일본의 6차 산업정책을 촉진시킨 주요한 사업이었으며,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의 연대에 의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동법상의 신연계사업은 서로 다른 분야의 중소기업 교류에 의한 신사업분야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종 업종간 교류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환경을 정비하여 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이는 일본 산업융합의 모태가 된 사업이었다.

초기의 6차 산업 개념이 농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취지에서 나왔다면, 2010년 이후 논의되고 있는 6차 산업은 보다 적극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즉, 초기의 6차 산업은 농가소득 감소 현상, 고령화되고 있는 취업농, 정체되고 있는 신규 취업자 등에 대한 문제를 농업인의 사업 다각화 형태로 극복하자는 취지가 강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본격화된 6차 산업은 농산물 재배 이후의 유통, 가공식품 산업이 가지고 있는 103조 엔 규모의 산업을 지역에 유입하고, 농업을 성장동력화하자는 보다 적극적인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6차 산업화법」은 2010년 6월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신성장 전략’⁷⁾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성장 전략은 ‘강한 경제,

5) 김태곤·허주녕, 농업의 6차산업화와 부가가치 창출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18면.

6)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참조(<http://www.meti.go.jp/>).

7) 일본 내각결정, 「新成長戦略」について, 平成22年6月18日 참조.

강한 재정, 강한 사회보장' 실현을 목적으로 수립된 전략이다. 이것은 7개 전략분야와 21개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수산업 관련 전략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6차 산업화에 대한 외부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에서의 입법에 대한 계기는 '위기상황의 돌파구 마련'에 있다. 이 법이 명문으로 제시하는 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⁸⁾

농산어촌은 수년 동안 우리나라의 풍부한 풍토와 근면한 국민성을 길러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를 창조해 왔다. 또한 농림어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은 농림수산물 등의 안정적인 공급기능 및 국토보전 등의 측면에 걸친 기능이 발휘되는 것으로, 농산어촌의 활력의 유지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농림어업 및 농산어촌은 내외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농림수산물 가격의 침체 등에 의한 소득감소, 고령화와 과소화의 진전 등에 의해 농산어촌의 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우리는 1차 산업인 농림어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3차 산업인 소매업 등의 사업과 종합적이고 일체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낳는 6차 산업화의 추진과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

용을 촉진해서 국산 농림수산물의 소비 확대·지산지소(地産地消) 등의 노력과 함께, 농림어업자의 소득 확보를 통해 농림어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농산어촌의 활력 재생, 소비자의 이익 증진, 식량 자급률 향상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동시에 이러한 노력은 농산어촌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토지, 물, 기타 자원의 유효한 활용, 지역의 식품 순환 자원의 재생 이용, 농림수산물의 생산지와 소비지와의 거리 감축 등을 통해 환경부하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여기에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의 창출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농산어촌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국산 농림수산물을 소비 확대하는 지산지소 등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다.

III. 주요 내용

1. 개관

「6차 산업화법」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등에 관한 시책 및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시책

8)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참조.

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농림어업 등의 진흥을 도모함과 동시에, 식량자급률 향상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동법은 그 목적 조항에서 밝히고 있듯이, 제2장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6차 산업화관계)을, 제3장에서 지역의 농림수산물 이용의 촉진(地産地消 관계)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의 신사업창출에 관한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화 사업계획과 연구개발·성과이용 사업계획이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제3장은 기본이념과 국가에 의한 기본방침의 설정,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 의한 지역 농림수산물 이용에 대한 촉진계획 수립 및 필요한 지원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표 1〉 「6차 산업화법」의 체계

제1장 총칙(제1조)
제2장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의 창출 등
제1절 총칙(제2조·제3조)
제2절 기본 방침(제4조)
제3절 농림어업 및 관련 사업의 종합화의 촉진에 관한 시책(제5조-제17조)
제4절 잡칙(제18조-제23조)
제5절 벌칙(제24조)
제3장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
제1절 총칙(제25조-제39조)
제2절 기본방침 등(제40조·제41조)
제3절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시책(제42조-제50조)

동법은 제1장(목적) 및 제3장(지산지소 관계)에 대하여는 공포한 날(2010년 12월3일)로부터 즉시 시행하였지만, 제2장(6차 산업화관계)에 대해서는 공포한 날(2010년 12월 3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하게 되어, 현재는 모든 규정이 시행되어 동법에 의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⁹⁾

2. 신사업 창출과 특례규정

1) 신사업 창출

제2장에서 의미하는 「신사업」이란, ‘농림어업 및 관련사업의 종합화사업’과 ‘연구개발·성과이용사업’을 가리킨다.

사업의 종합화는 다양한 효과를 가져 온다. 먼저 농림어업자의 소득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농림어업의 생산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온다. 둘째, 에너지원으로 이용 가능하고, 기타의 농림수산물 등의 새로운 수요 개척 등으로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농림수산물 및 농산어촌에 존재하는 토지, 수자원, 기타의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사업의 다각화 및 고도화, 새로운 사업의 창출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농림어업 및 관련 사업의 종합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의 종합화 촉진을 위해서는

9) 일본 농림수산물 「6차 산업화법」 웹사이트(<http://www.maff.go.jp/j/soushoku/sanki/6jika.html>).

농림수산물 또는 이것을 원재료로 하는 신상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관한 신기술의 도입이 중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다양한 주체에 의한 당해 신기술의 연구 개발 및 그 성과의 이용이 추진되어야 한다(제2조).

먼저, 동법의 규율 대상인 종합화 사업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첫째, 자체생산에 따른 농림수산물 등을 그 필수적인 원자재로 사용한 신상품의 개발, 생산 또는 수요의 개척, 둘째, 자체 생산에 따른 농림수산물 등에 대해 행한 새로운 판매 방식의 도입 또는 판매 방식의 개선, 셋째, 앞의 조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농림어업용 시설의 개선 또는 취득, 신규 작물 또는 가축의 도입 지역에 있는 토지, 수자원, 기타 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한 생산방식의 도입, 기타 생산방식의 개선을 종합화 사업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종합화 사업의 대상은 ‘자체’ 생산한 농림수산물에 대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있다.

농림어업자 등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종합화 사업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수산대신은 그 종합화 사업계획이 적정한 경우,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이하 ‘인증 종합화 사업계획’이라 한다). 종합화 사업계획에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림

어업자 등의 농림어업 경영 현황, 종합화 사업 목표, 종합화 사업의 내용 및 실시 기간, 종합화 사업의 실시 체제, 종합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액수 및 그 조달 방법, 그 밖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제5조).¹⁰⁾

6차 산업화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융복합에 기반하므로,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공조관계가 중요하다. 이에 대하여 6차 산업화법은 종합화 사업의 주무부처와 사업 관련 협조관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먼저 농림수산부 장관은 종합화 사업계획에 그 소관 업 이외의 사업실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승인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과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종합화 사업에 제공하는 시설에 관하여 해당 개발행위 또는 건축행위 등을 함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43조 제1항의 도도부현 지사와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도도부현 지사는 당해 개발행위 또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한다. 농림수산부 장관은 종합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계 도도부현 지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산지 연계 야채공급계약에 따른 지정 야채 공급사업자가 포함된 종

10) 이에 대하여 임의적 기재사항으로는 종합화 사업에 제공하는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1) 당해 시설의 종류 및 규모, 기타 당해 시설의 정비 내용, 2) 해당 시설에 제공하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 및 면적, 3) 그 밖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다.

합화 사업계획에 대해 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독립 행정법인인 농축산업 진흥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연구개발·성과사용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사용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주무대신에게 제출하여 그 연구개발·성과사용 사업계획이 적당하다는 취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제7조). 종합화 사업계획과 달리 연구개발·성과사용 사업계획은 주무장관이 승인의 주체이며, 사업계획에 관한 시설에 관하여는 도도부현 지사와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지원조치

승인받은 종합화 사업계획 또는 연구개발·성과이용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각종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자금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촉진사업자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농업개혁조치로 간주되어 농업개발자금융통법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고, 임업·목재산업 개선조치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임업목재산업 개선자금조성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어업자의 경우에는 연안어업개선자금조성법에 의해 경영 등 개선자금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식

품유통개선촉진기구는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차입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고,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동 기구는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의 정비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알선까지 그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다.

둘째, 승인받은 종합화 사업계획 또는 연구개발·성과이용 사업계획에 대해서 농지 등의 특례지원을 하고 있다. 즉 위 사업계획을 위한 시설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하고(농지법의 특례), 초지의 형질변경의 신고를 면해 주고 있다(낙농 및 육우생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특례). 시가화조정구역 내의 개발행위를 도시계획법상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도시계획법의 특례).

셋째, 종합화 사업계획에 따라 산지 연계 야채공급계약에 따른 지정 야채 공급사업을 하는 농림어업자 등에 대해서는 야채생산출하안정법에 규정하는 등록 제조자로 간주하여 동법 제12조 규정을 적용한다. 연구개발·성과사용 사업의 사업자는 사업성과에 의한 출원품종의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등록품종의 경우에는 등록비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종묘법의 특례).

〈표 2〉 「6차 산업화법」 제2장의 주요내용

제1절 총칙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2절 기본방침
제4조 기본방침
제5조 종합화 사업계획의 승인
제6조 종합화 사업계획의 변경
제7조 연구개발·성과사용 사업계획의 승인
제8조 연구개발·성과사용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9조 농업개량자금융통법의 특례
제10조 임업·목재산업 개선 자금조성법의 특례
제11조 연안어업개선자금조성법의 특례
제12조 농지법의 특례
제13조 낙농 및 육우 생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14조 도시계획법의 특례
제3절 농림어업 및 관련사업의 종합화에 관한 시책
제15조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의 특례
제16조 야채생산출하안정법의 특례
제17조 종묘법의 특례
제4절 그 밖의 규칙
제18조 국가 등의 시책
제19조 자금확보
제20조 지도 및 조언
제21조 보고의 징수
제22조 주무 대신 등
제23조 권한의 위임
제5절 벌칙
제24조

3.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일본은 6차 산업화 과정에서 지산지소(地産地消), 산지직판장 운영 등이 성과를 거두었고,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입법화한 것이 바로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것이다. 먼저 지산지소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운동이다. 농업과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배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대하여 지역산 농산물·가공품·특산품 등의 판매를 확대하는 운동의 일환이었지만, 나아가 ‘지역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한 상품 생산’과 ‘생산된 상품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활동’의 양면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발전되었다.¹¹⁾

이에 따라 「6차 산업화법」은 ‘국내 지역’에서 생산된 농림수산물(식용에 제공되는 것에 한한다)을 그 생산된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것(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 및 식품으로 가공하는 것을 포함)과 지역에서 공급이 부족한 농림수산물이 있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해당 농림수산물을 소비하는 것을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역 농림산물 이용촉진에 관한 동법 제3장의 주요내용은 (1) 기본 이념, (2) 국가에 의한 기본방침의 설정,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 의한 지역 농림수산물 이용에 대한 촉진계획 수립

11) 김태곤·허주녕, 앞의 책, 19면 이하.

및 (3)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필요한 지원 실시로 되어 있다.

1) 기본이념

「6차 산업화법」은 제26조 내지 제33조에서 이 법의 기본이념을 매우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기본이념의 법적 구속력의 존부 여부를 떠나, 6차 산업화에 관한 기본법 또는 일반법으로 제정되었음을 보여 주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①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은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가 희박해지는 가운데, 소비자가 스스로 소비하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와의 교류나 그 농림수산물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한편, 생산자가 소비자의 수요 정보와 스스로 생산한 농림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와 이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취지로 행해져야 한다(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 강화).

②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에 따라 소비와 판매가 이루어짐으로써,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한 농림수산물의 생산을 촉진하고, 관련사업의 사업자와 이 지역의 생산자가 연계하여 지역의 농림수산물을 이용하는 것에 의해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아울러 소규모 생산자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생산자가 신뢰와 자부심을 가지고 농림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농림어업 및 관련 사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취지로 이루어져야 한다(지역의 농림어업 및 관련 사업의 진흥에 의한 지역 활성화).

③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를 통해 구축된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신뢰관계 아래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지역 농림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것,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여 소비자가 신선한 농림수산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지역의 농림수산물을 활용하여 식생활에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에 의해 소비자의 풍부한 식생활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취지로 이루어져야 한다(소비자의 풍부한 식생활의 실현).

④ 지역의 농림수산물을 이용하여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교류 등을 통해 식생활이 그 생산 등에 관한 사람들의 활동에 힘입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조성되어 지역의 농림수산물을 이용한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 및 전통 식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는 등 식육의 추진을 도모할 것임에 비추어 식육과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취지로 이루어져야 한다(식생활 교육과의 일체적인 추진).

⑤ 농산어촌의 생산자와 도시의 소비자와의 관계 강화에도 이바지하는 노력이다.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을 도시와 농산어촌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각 지역의 매력을 존중하고 활발한 사람과 물건과 정보의 왕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이다.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대류와 일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풍요로

운 국민 생활의 실현과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대류와의 일체적 추진).

⑥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수요에 맞는 농업 생산 농지의 최대한의 활용을 통해 농림어업을 진흥하고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의 확보에 이바지함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식량 자급률 향상에 기여).

⑦ 농림수산물의 생산지와 소비지와의 거리가 감축됨에 따라 그 운송 거리가 짧아져 그 수송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억제되는 것 등에 의해 지역의 식품 순환 자원의 재생 이용 등의 노력과 함께, 환경 부하의 저감에 기여하는 것을 취지로 이루어져야 한다(환경 부하의 저감에 기여).

⑧ 지역에서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에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 다양한 주체에 의한 창의력을 살린 주체적인 노력을 존중하면서 그 다양한 주체의 연계 강화 등으로 더욱더 추진을 도모하는 것을 취지로 이루어져야 한다(사회적 기운의 양성 및 지역의 주체적인 활동 촉진).

2) 국가에 의한 기본방침의 설정,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 의한 지역 농림수산물 이용에 대한 촉진계획 수립

국가는 위와 같은 기본이념에 바탕을 두고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가 있다(제34조). 또한 지방공공단체도 기본이념에 근거하여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하여 국가와의 연계를 도모하며, 그 지방공공단체의 지역 특성을 살린 자주적인 시책을 수립 및 실시할 책임이 있다(제35조).

한편, 농림수산물 생산자 및 조직하는 단체와 같은 제조자 등도 기본이념에 따라 지역 소비자와의 적극적인 교류 등을 통해 그 수요에 대응한 농림수산물을 생산하는 등 지역의 생산과 소비의 실태에 따라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에 임하도록 노력한다(제36조). 사업자도 그 사업 활동에 있어서 지역 농림수산물을 활용하는 등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노력한다(제37조). 마찬가지로 소비자는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에 관한 이해가 깊어져 지역 농림수산물을 소비하는 등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제38조).

3)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필요한 지원 실시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방침¹²⁾은 농림수산대신이 결정한다. 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위 기본방침을 감안하여 지역 농

12) 기본방침으로 정하는 사항으로는 1)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의 목표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다.

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활동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개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직매소, 기타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의 촉진에 기여하는 농림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을 위한 시설 등 기반 정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직판장 등을 이용한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판매상황 관리시스템의 도입 등으로 직판장의 운영 및 기능의 고도화, 직매소 간의 연계의 확보 및 강화, 판매지역의 특성 등에 따른 다양한 장소와 형태로 판매방식지원, 기존시설의 활용 촉진, 생산자 등에 의한 농림수산물 가공품의 개발촉진, 직판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③ 농림수산물이 생산된 지역의 학교급식, 기타 급식, 식품 관련사업 등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농림수산물의 생산자와 영양교사, 기타 교육관계자 및 식품 관련 사업을 하는 자와의 연계 강화, 지역의 농림수산물 및 이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④ 지역의 소비자 및 식품 관련 사업자 등 다양한 수요 및 지역의 농림수산물 생산량의 변화, 유통에 드는 비용 등 과제에 대응한 농림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농산어

촌과 도시의 각 지역에서 그 특성을 살리면서 다양한 품목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와의 제휴 등에 의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지역 농림수산물에 따른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⑤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노력을 통해 식육의 추진 및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교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생산, 판매 등의 체험 활동의 촉진, 학교급식 등 아동 및 학생들과 농림수산물의 생산자와의 교류 기회 제공, 지역의 전통음식문화를 전승하는 활동 등에 대한 지원,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⑥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다양한 품목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체제 정비에 기여하는 기술을 가진 생산자, 직판장 등의 판매 및 운영 및 지역의 농림수산물을 이용한 가공 식품 개발 등에 대한 지식 경험을 가진 자,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에 임하는 자 간 상호 연계강화를 도모하는 활동을 하는 자 등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기여하는 인재육성, 자질향상 및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연수실시, 기술보급지도,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에 임하는 사람의 교류,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각 지역의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대처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정리, 분석 및 제공,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한

편 관계부처 상호간의 연계강화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 지방공공단체, 생산자, 사업자, 소비자들의 다양한 주체가 상호 연계하여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표 3〉 「6차 산업화법」 제3장의 주요내용

제1절 총칙

- 제25조 정의
- 제26조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 강화
- 제27조 지역의 농림어업 및 관련 사업의 진흥에 의한 지역 활성화
- 제28조 소비자의 풍부한 식생활의 실현
- 제29조 식생활 교육과의 일체적인 추진
- 제30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대류와의 일체적인 추진
- 제31조 식량 자급률 향상에 기여
- 제32조 환경 부하의 저감에 기여
- 제33조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 및 지역의 주체적인 노력의 촉진
- 제34조 국가의 책무
- 제35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 제36조 제조사 등의 노력
- 제37조 사업자의 노력
- 제38조 소비자의 노력
- 제39조 재정상의 조치 등

제2절 기본방침

- 제40조 기본방침
- 제41조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촉진 계획
- 제42조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기반 정비
- 제43조 직매소 등을 이용한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
- 제44조 학교 급식 등의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
- 제45조 지역 수요 등에 대응한 농림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

- 제46조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활동을 통한 식생활 교육의 추진 등
- 제47조 인재 육성 등
- 제48조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증진
- 제49조 조사연구의 실시 등
- 제50조 다양한 주체의 연계 등

IV. 마치며

실제 6차 산업은 그 정의한 바와 같이 쉽게 접근할 수 있거나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의 6차 산업화법도 6차 산업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동법이 제시하고 있는 기본이념은 6차 산업의 과거와 미래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목표설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비전을 법적으로 명확화한 점은 6차 산업화의 일반법으로 보기에 손색이 없다. 이에 비해 6차 산업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상황은 산업계 일부의 것으로 치부되거나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국제적 경제 위기에서 농어촌경제를 지켜 내야 하고,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른 사회구조의 재편, 지역 간 단절된 경제 사회의 극복 등 일본의 상황은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 자생적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 활성화와 극대화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채 필 호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참고문헌

김태곤·허주녕, 농업의 6차 산업화와 부가가치 창출방안,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2011.

서윤정, 6차 산업 융복합 혁명, HNCOM, 2013.

충남발전연구원, 지연순환농식품체계와 로컬푸드 연구회 위

크숍자료, 2011. 8.

일본 내각결정, 「新成長戦略」について, 平成22年6月18日.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http://www.meti.go.jp/>.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http://www.maff.go.jp/>.

일본 농림수산성 6차 산업화법 웹사이트 <http://www.maff.go.jp/j/soushoku/sanki/6jika.html>.